

# 경북행복 BRIEF

제26호 2019. 4. 1.

법 인 명 칭 (재)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재)경북행복재단 편찬팀  
주 소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T E L 054-710-8814  
홈 페이지 www.ghf.or.kr

- 1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박종철(경북행복재단 복지경영팀장) ..... 1p
-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김동화(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 11p

## 1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1.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사회복지분야 국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용·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고유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이중의 정책적 요구에 대응해야 함.
- 경북 민선 7기가 추진하는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토대 위에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참여,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복지문제를 자주적·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북의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지역 중심의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의 지역 중심 통합 돌봄체계 구축 및 경북 민선 7기 이웃사촌 복지센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보고서는 최근 5년 동안의 경북의 노인인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인정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이용실태 추이를 시·군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함.
- 분석을 위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북도의 관련 통계연보 및 행정보고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등재된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를 대조·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과정으로 수집함.

## II. 경북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

### 1. 지속적 고령화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8. 12월 말 기준 19.78%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최근 5년 간 경북의 주민등록상 총 인구는 23,963명이 감소(-0.9%)하였으나, 노인인구는 그 반대로 61,997명이 증가(13.3%)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도(4.29%), 고령(4.08%), 문경(3.94%), 의성(3.58%), 영주(3.45%), 청송·성주(3.41%), 울릉(3.38%), 포항(3.14%) 등 9개 지역은 같은 기간 3%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포항·구미·문경·영주·경산 등 시 지역의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 등 7개 지역은 인구의 1/3이 노인이며, 18개 시·군은 이미 노인인구비율이 21%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표 1] 최근 5년 경북 고령화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2018. 12.	최근 5년 비율 증감
전국	12.70	13.15	13.53	14.21	14.76	2.06
경북	17.30	17.75	18.23	19.05	19.78	2.47
포항	11.96	12.55	13.22	14.20	15.10	3.14
경주	17.63	18.22	18.80	19.69	20.44	2.81
김천	20.03	19.87	20.03	20.67	21.49	1.46
안동	19.77	20.06	20.54	21.62	22.72	2.95
구미	6.93	7.20	7.51	7.97	8.41	1.47
영주	21.22	21.94	22.50	23.57	24.66	3.45
영천	23.71	24.24	24.93	25.78	26.42	2.72
상주	26.34	26.92	27.28	28.27	29.01	2.67
문경	24.33	24.93	25.82	27.12	28.28	3.94
경산	13.20	13.63	14.10	14.79	15.35	2.15
군위	34.68	35.28	35.87	36.75	37.56	2.88
의성	35.27	36.08	36.83	37.94	38.85	3.58
청송	31.47	31.97	32.70	33.73	34.88	3.41
영양	32.07	32.58	33.18	34.12	35.05	2.99
영덕	31.93	32.52	33.03	34.11	34.87	2.94
청도	30.95	31.79	32.77	34.10	35.24	4.29
고령	24.37	25.20	25.95	27.40	28.45	4.08
성주	26.00	26.68	27.43	28.44	29.42	3.41
칠곡	12.14	12.37	12.56	13.38	14.05	1.91
예천	32.47	33.11	32.58	31.38	29.80	▽ 2.67
봉화	30.64	31.21	31.92	32.91	33.61	2.97
울진	24.17	24.39	24.48	25.22	26.13	1.96
울릉	19.91	20.72	21.54	22.44	23.29	3.38

자료 :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함.

### 2. 요양·돌봄 욕구 급증

- 최근 5년 간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자 35.8% 증가
  - 2018년 말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자는 75,315명으로 2014년 말 대비 35.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인인구 증가율(13.3%)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임.

[표 2] 최근 5년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2018. 12.	최근 5년 비율 증감
경북	전체	467,352	479,634	492,417	512,681	529,349	13.3
	신청	55,473	59,263	63,799	69,311	75,315	35.8
포항	전체	62,118	65,214	68,296	72,952	77,024	24.0
	신청	7,012	7,682	8,339	9,050	10,043	43.2
경주	전체	46,118	47,334	48,789	50,780	52,504	13.8
	신청	4,916	5,418	6,035	6,717	7,351	49.5
김천	전체	27,130	27,839	28,488	29,536	30,318	11.8
	신청	2,889	3,106	3,356	3,682	4,009	38.8
안동	전체	33,358	33,954	34,672	35,948	36,850	10.5
	신청	4,785	5,080	5,369	5,766	6,075	27.0
구미	전체	29,136	30,252	31,554	33,605	35,432	21.6
	신청	3,378	3,768	4,142	4,559	5,064	49.9
영주	전체	23,503	24,080	24,577	25,541	26,341	12.1
	신청	2,713	2,832	3,125	3,311	3,588	32.3
영천	전체	23,869	24,394	25,063	25,940	26,844	12.5
	신청	2,835	3,078	3,359	3,664	4,019	41.8
상주	전체	27,105	27,563	27,769	28,535	29,100	7.4
	신청	2,972	3,207	3,489	3,854	4,384	47.5
문경	전체	18,472	18,896	19,285	19,877	20,324	10.0
	신청	2,476	2,629	2,842	3,079	3,310	33.7
경산	전체	33,515	35,004	36,375	38,370	40,066	19.5
	신청	3,893	4,202	4,550	5,074	5,604	44.0
군위	전체	8,382	8,511	8,670	8,898	8,983	7.2
	신청	1,008	1,078	1,077	1,068	1,135	12.6
의성	전체	19,472	19,653	19,896	20,289	20,570	5.6
	신청	2,251	2,405	2,629	2,854	3,053	35.6
청송	전체	8,325	8,434	8,600	8,773	8,957	7.6
	신청	1,058	1,052	1,131	1,183	1,278	20.8
영양	전체	5,835	5,832	5,878	5,963	6,084	4.3
	신청	826	825	866	857	895	8.4
영덕	전체	12,639	12,743	12,897	13,141	13,287	5.1
	신청	1,295	1,424	1,595	1,774	1,858	43.5
청도	전체	13,615	13,899	14,274	14,779	15,172	11.4
	신청	2,165	2,118	2,138	2,230	2,368	9.4
고령	전체	8,537	8,717	8,889	9,253	9,380	9.9
	신청	999	1,040	1,087	1,185	1,269	27.0
성주	전체	11,697	12,013	12,398	12,839	13,142	12.4
	신청	1,377	1,449	1,527	1,624	1,735	26.0
칠곡	전체	14,820	15,200	15,479	16,166	16,692	12.6
	신청	1,925	1,997	2,064	2,244	2,347	21.9
예천	전체	14,644	14,793	15,043	15,458	15,876	8.4
	신청	1,723	1,825	1,939	2,121	2,298	33.4
봉화	전체	10,425	10,551	10,706	10,946	11,040	5.9
	신청	1,009	1,023	1,038	1,197	1,264	25.3
울진	전체	12,593	12,654	12,665	12,854	13,073	3.8
	신청	1,791	1,863	1,933	2,052	2,208	23.3
울릉	전체	2,044	2,104	2,154	2,238	2,290	12.0
	신청	177	162	169	166	160	- 9.6

자료 : 각 연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률은 63.9%로, 5년 전에 비해 7.9% 증가함.

-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자의 지속적 증가세와 판정률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돌봄서비스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표 3] 최근 5년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신청 대비 인정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2018. 12.	최근 5년 비율 증감
경북	31,053 (56.0)	34,142 (57.6)	37,791 (59.2)	42,254 (61.0)	48,129 (63.9)	7.9
포항	3,986 (56.8)	4,286 (55.8)	4,695 (56.3)	5,193 (57.4)	6,108 (60.8)	4.0
경주	2,655 (54.0)	3,104 (57.3)	3,609 (59.8)	4,075 (60.7)	4,593 (62.5)	8.5
김천	1,720 (59.5)	1,888 (60.8)	2,129 (63.4)	2,350 (63.8)	2,598 (64.8)	5.3
안동	2,615 (54.6)	2,822 (55.6)	3,019 (56.2)	3,312(57.4)	3,634 (59.8)	5.2
구미	1,987 (58.8)	2,300 (61.0)	2,605 (62.9)	2,939 (64.5)	3,475 (68.6)	9.8
영주	1,603 (59.1)	1,665 (58.8)	1,862 (59.6)	2,014 (60.8)	2,299 (64.1)	5.0
영천	1,710 (60.3)	1,878 (61.0)	2,113 (62.9)	2,317 (63.2)	2,613 (65.0)	4.7
상주	1,697 (57.1)	1,930 (60.2)	2,183 (62.6)	2,459 (63.8)	3,014 (68.8)	11.7
문경	1,551 (62.6)	1,682 (64.0)	1,851 (65.1)	2,076 (67.4)	2,318 (70.0)	7.4
경산	2,220 (57.0)	2,498 (59.4)	2,827 (62.1)	3,297 (65.0)	3,831 (68.4)	11.3
군위	570 (56.5)	608 (56.4)	600 (55.7)	615 (57.6)	694 (61.1)	4.6
의성	1,310 (58.2)	1,463 (60.8)	1,669 (63.5)	1,842 (64.5)	2,014 (66.0)	7.8
청송	555 (52.5)	564 (53.6)	648 (57.3)	713 (60.3)	824 (64.5)	12.0
영양	391 (47.3)	421 (51.0)	473 (54.6)	480 (56.0)	528 (59.0)	11.7
영덕	699 (54.0)	823 (57.8)	923 (57.9)	1,016 (57.3)	1,096 (59.0)	5.0
청도	1,081 (49.9)	1,062 (50.1)	1,092 (51.1)	1,256 (56.3)	1,455 (61.4)	11.5
고령	518 (51.9)	564 (54.2)	609 (56.0)	689 (58.1)	815 (64.2)	12.4
성주	723 (52.5)	788 (54.4)	837 (54.8)	948 (58.4)	1,084 (62.5)	10.0
칠곡	1,126 (58.5)	1,247 (62.4)	1,309 (63.4)	1,449 (64.6)	1,534 (65.4)	6.9
예천	880 (51.1)	960 (52.6)	1,079 (55.6)	1,278 (60.3)	1,439 (62.6)	11.5
봉화	520 (51.5)	558 (54.5)	559 (53.9)	719 (60.1)	800 (63.3)	11.8
울진	853 (47.6)	965 (51.8)	1,025 (53.0)	1,136 (55.4)	1,287 (58.3)	10.7
울릉	83 (46.9)	66 (40.7)	75 (44.4)	81 (48.8)	76 (47.5)	0.6

비율은 등급판정신청자 수 대비 인정자의 비율임.

자료 : 각 연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3. 노인 요양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 요양 · 돌봄서비스의 개념적 이해

- 강혜규 등(2016)은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를 통해 노인 돌봄을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 노인돌봄기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봄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6가지이며, 일반적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4대 핵심 재가장기요양서비스로 보고 있음.
- 지역사회보호서비스는 이용료 중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바우처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 제공기관 보조를 통한 무료서비스인 노인돌봄기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급안전알림서비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있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가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변 · 활동지원, 가사 · 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97,000원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정부지원 최대 월 458,280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같은 법령에 따라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임.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센서를 설치하여 365일 거주자의 활동상황, 화재, 가스누출 등을 모니터링하고, 119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무상 돌봄서비스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그리고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 재가노인복지시설 유형 다양화

- 노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관련 법규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와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 한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돌봄서비스를 병설하여 제공할 수 있음.
- 그에 따라 재가복지시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과 함께 종합재가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의 다양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공자 혹은 시설관리행정 중심의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체계로는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본 연구는 개별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기준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sup>1)</sup>

1)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노인복지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시설이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과 달리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로 시설수를 산정하고 그 합계치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보다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어 본 보고서는 최대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제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함. 이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관련 법규와 지침, 획득한 이용권의 범위 안에서 다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선택,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① 종합재가복지시설<sup>2)</sup>

- 4대 핵심 재가장기요양서비스(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와 지역사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4대 핵심 재가장기요양서비스 + 돌봄종합(바우처) + 기타 재가복지서비스(돌봄기본, 응급안전돌보미, 재가노인지원)

② 준종합재가복지시설<sup>3)</sup>

- 방문간호를 제외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 돌봄종합(바우처) +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③ 복합재가복지시설<sup>4)</sup>

-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종합,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중 2가지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장기요양서비스 일부 + 돌봄종합(바우처), 장기요양서비스 일부 +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또는 돌봄종합(바우처) +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④ 단종재가복지시설<sup>5)</sup>

-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종합(바우처),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중 한 영역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시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1,102개소, 요양·돌봄 수요자 68명당 1개소(2019. 2월 말 기준)

-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경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제 기관수는 2019. 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1,102개소로 요양·돌봄 수요자<sup>6)</sup> 68명당 1개소로 파악됨.<sup>7)</sup>
  - 종합재가복지시설은 없음.
  - 준종합재가복지시설은 모두 12개로, 경산이 3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의성이 2개소, 문경, 군위, 청도, 성주, 칠곡이 각각 1개소임
  - 복합재가복지시설은 모두 259개로, 이 중 4대 장기요양서비스 중 전부 또는 일부와 돌봄종합(바우처)서비스 2종을 제공하는 시설은 모두 243개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일부와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2종을 제공하는 시설은 6개, 그리고 돌봄종합(바우처)서비스와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2종을 제공하는 시설은 10개소인 것으로 파악됨.
  - 단종재가복지시설은 모두 831개소로, 이 중 4대 핵심 장기요양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시설이 769개소로 가장 많고, 돌봄종합(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32개소, 기타 재가복지서비스 전부 혹은 일부를 제공하는 시설이 30개소임.
-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 4대 핵심 장기요양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시설은 11개소로 전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0.9%에 불과함.

2)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포함된 종합재가복지시설의 유형을 따름 : 보건·의료+요양+지역사회돌봄

3, 4, 5) 이 보고서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용어임.

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7)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경상북도 노인효복지과 내부자료, 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재된 2019년 2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등재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종합, 비교·확인함.

[표 4] 경북 노인 요양·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19. 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돌봄수요 (A) 장기요양 등급인정 신청자수 ('18. 말)	시설유형별								
		계			복합			단종		
		시설수 (B)	공급비 (A/B) <개소당인원>	준종합	1*	2**	3***	장기 요양	돌봄 (종합)	재가복지 서비스
경북	75,315	1,102	68	12	243	6	10	769	32	30
포항	10,043	172	58		47	1	1	113	5	5
경주	7,351	94	78		1	25		63	2	3
김천	4,009	62	65		15		1	43	1	2
안동	6,075	60	101	1	18			36	3	2
구미	5,064	95	53		13		4	76	1	1
영주	3,588	46	78		15	1		30		
영천	4,019	74	54		8			63	2	1
상주	4,384	69	64		23		2	40		4
문경	3,310	40	83	1	8			28	2	1
경산	5,604	104	54	3	11			89	1	
군위	1,135	13	87	1	2			10		
의성	3,053	36	85	2	10	1	1	17	4	1
청송	1,278	15	85		6		1	7	1	
영양	895	13	69		5			6	1	1
영덕	1,858	22	84		13			8		1
청도	2,368	39	61	1	6	1		30		1
고령	1,269	17	75					14	2	1
성주	1,735	23	75	1	4			16	1	1
칠곡	2,347	35	67	1				33	1	
예천	2,298	37	62		3			29	2	3
봉화	1,264	13	97		1	1		9	1	1
울진	2,208	19	116		10	1		7	1	
울릉	160	4	40					2	1	1

\*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일부 + 돌봄종합(바우처)서비스

\*\*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일부 + 기타 재가복지서비스(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 돌봄종합(바우처)서비스 + 기타 재가복지서비스(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자료 : 다음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경상북도 노인회복지과 내부자료(2018년 말 기준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 4. 재가서비스 이용 욕구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모두 43,313명이며, 이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28,550명으로 전체 급여수급자의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4년(61.7%)에 비해 4.2%p 증가한 것으로 요양·돌봄 수요자의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시·군별로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주로 10.9%가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고령(7.9%), 울릉(7.0%), 경주(6.2%), 의성·청송·성주·칠곡(5.9%)의 순으로 나타남.

[표 5]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추이(2014~2017)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4년간 비율 증감
경북	20,048 (61.7)	22,480 (63.0)	24,936 (64.2)	28,550 (65.9)	4.2
포항	2,763 (72.4)	3,019 (72.1)	3,251 (72.3)	3,647 (74.2)	1.8
경주	2,063 (74.5)	2,430 (76.9)	2,924 (78.6)	3,383 (80.7)	6.2
김천	970 (53.6)	1,071 (53.4)	1,221 (54.3)	1,415 (55.4)	1.8
안동	1,769 (66.5)	1,961 (69.3)	2,081 (69.4)	2,312 (70.4)	3.8
구미	1,016 (47.8)	1,127 (48.3)	1,264 (49.6)	1,528 (52.9)	5.0
영주	842 (52.8)	909 (54.9)	964 (53.1)	1,067 (54.6)	1.8
영천	1,356 (72.7)	1,510 (74.1)	1,702 (75.2)	1,907 (75.8)	3.2
상주	1,006 (53.4)	1,250 (58.1)	1,431 (60.8)	1,759 (64.2)	10.9
문경	931 (57.4)	1,090 (59.5)	1,198 (60.3)	1,331 (60.4)	3.0
경산	1,226 (59.9)	1,413 (61.6)	1,548 (62.2)	1,832 (63.8)	3.9
군위	436 (63.9)	464 (61.6)	493 (62.1)	521 (64.4)	0.5
의성	843 (59.6)	962 (60.6)	1,096 (62.7)	1,264 (65.6)	5.9
청송	312 (50.1)	335 (52.4)	353 (52.4)	439 (56.0)	5.9
영양	234 (50.1)	256 (52.8)	292 (56.2)	307 (53.9)	3.8
영덕	556 (69.0)	644 (69.9)	761 (73.5)	824 (72.7)	3.7
청도	812 (62.6)	791 (59.1)	792 (59.2)	919 (62.4)	▽ 0.2
고령	322 (57.8)	383 (60.4)	438 (64.6)	509 (65.7)	7.9
성주	462 (61.5)	523 (63.3)	590 (65.8)	653 (67.4)	5.9
칠곡	558 (50.4)	634 (53.2)	660 (53.7)	732 (56.4)	5.9
예천	599 (60.9)	638 (60.7)	725 (63.7)	891 (65.4)	4.5
봉화	219 (41.5)	239 (40.6)	251 (41.3)	321 (44.4)	2.9
울진	723 (72.7)	809 (72.8)	872 (72.6)	954 (74.0)	1.4
울릉	30 (35.7)	22 (28.9)	29 (37.7)	35 (42.7)	7.0

비율은 급여수급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임.

자료 :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

## 5. 요양·돌봄서비스 정보접근성

■ 요양·돌봄서비스에 관한 이용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와 제공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sup>8)</sup>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지역별·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 제공서비스 종류, 평가결과, 주소, 연락처, 이용현황, 종사자 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up>9)</sup>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지역별·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 품질평가, 이용현황 및 제공인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복지로<sup>10)</sup> : 복지서비스

- 개인별 욕구·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검색 가능

8) <http://www.longtermcare.or.kr/npbs/>

9) <http://www.socialservice.or.kr/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10)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회원가입과 본인 또는 성인 가족의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 동의가 필수이며, 가족을 위한 서비스 검색을 위해서는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본인 인증 및 (성인) 가족 동의는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동거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해당자가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접근성에 제한이 있음.
- 보건복지부 : 정보
  -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제공 : 시설목록 및 기본정보(정원, 현원, 종사자 등)를 수록한 정보를 한글파일 형태로 제공

### III. 고찰 및 결론

#### 1. 지역 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분절성 문제

- 요양·돌봄을 위한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른 통합성과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적절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 분석 결과, 2019. 2월 현재 경북에는 모두 1,102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재가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중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 보호 등 4대 핵심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요양·돌봄 수요자 대비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전체적으로 평균 68명당 1개소 정도이고, 포항·김천·구미·영천·상주·경산 등 시 지역은 경북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나 군 지역의 수요 대비 공급비는 경북 전체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시설 중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769개소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의 측면에서 볼 때,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음.
  - 첫째, 기관 운영의 재원을 주로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수가에 의존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기관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 둘째, 단종서비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시설유형에 편중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은 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 즉 노인의 상태와 욕구의 변화에 따른 연속적이고 통합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즉 서비스 공급 및 이용체계가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절화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셋째, 서비스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각각의 정보제공주체들은 기관의 관리책임 범위에 국한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로는 농촌 군 지역 노인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제한된 것이 사실임.

#### 2. 지역 제공기관 간 연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연속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돌봄 연속체계가 노인에게 살던 곳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진전 혹은 퇴화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요양·돌봄서비스체계는 노인의 건강 및 활동능력의 퇴행 혹은 노화의 진전정도에 따라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을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로 갈수록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회복을 돕기 위한 보호와 재활의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의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 분석 결과, 서비스별로 분절화된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이 통합된 종합재가센터의 설치·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종합재가센터설치를 포함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재가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역 내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신규 시설의 설치를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 개별 기관 간의 합병 또는 연합을 통한 지역 중심의 보호연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러한 관점에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위한 성숙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심 추진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북형 커뮤니티케어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상태에 부합하는 맞춤형 Total-Care-Plan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연계·조정·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적·제도적 복지급여와 함께 지역의 민간자원 개발과 연계,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로의 이용 장벽을 완화하거나 지역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역 노인, 특히 고령의 요양·돌봄 욕구와 수요를 지닌 채 홀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케어통합창구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응하는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행정 패러다임을 벗어나 찾아가는 발굴주의 행정 패러다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인력 및 재정 확대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함.

## 참고문헌

강혜규 외. (2016).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2014; 2015; 2016;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자료(2014~2018 연도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2017. 12월 말 기준)

경상북도 내부자료 : 노인복지시설 현황(2018.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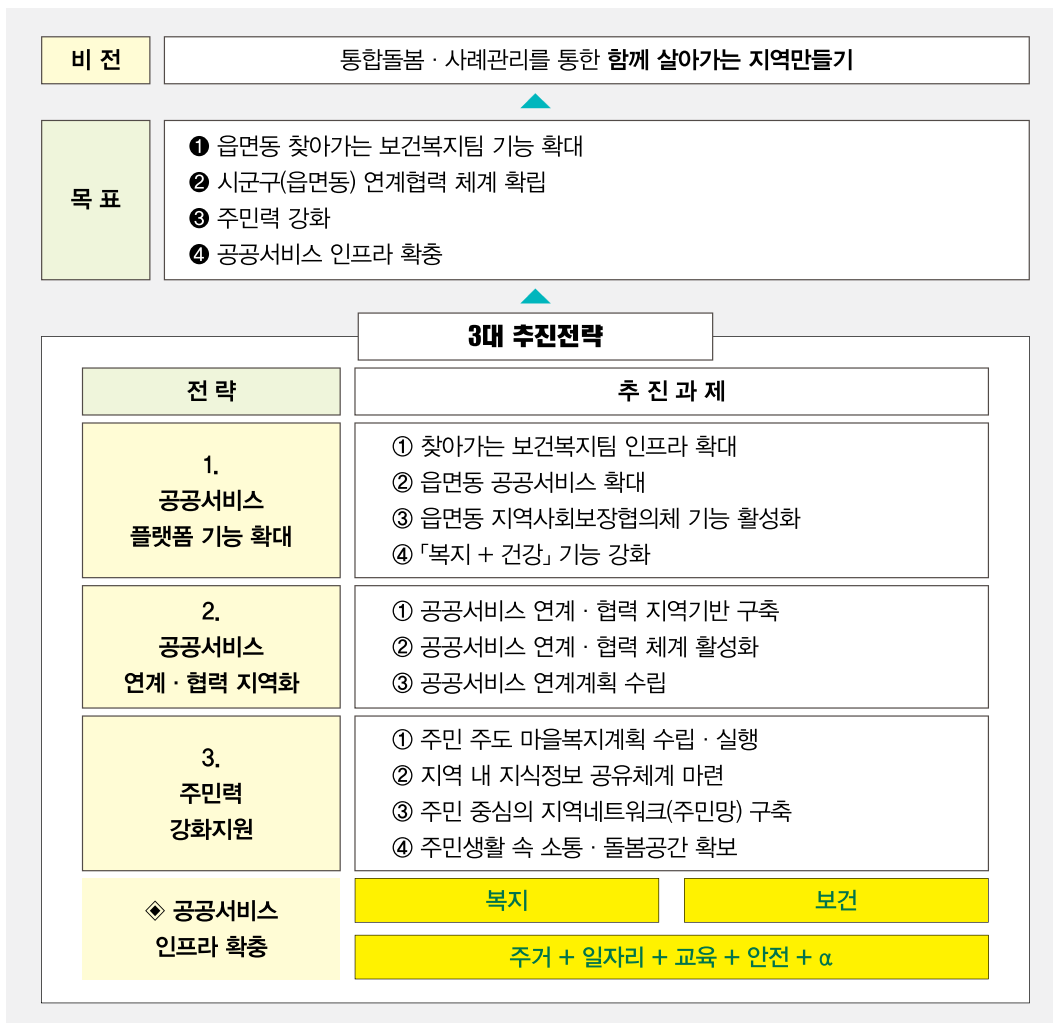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장기요양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sup>1)</sup>

### 1. 추진배경 및 추진계획

- 1995년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행안부), 읍면동 복지허브화('16~'17년, 복지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17년~, 행안부)라는 명칭으로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계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해옴.
-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 (인력) '18~'22년 보건복지인력 1.5만 명을 확충하여 읍면동 배치 추진
  - ※ (업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통합 사례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추진계획 및 주요추진사항'(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안)을 중심으로 작성

## II. 주요 추진 사항

### 1.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읍면동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착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건강관리 서비스 추가로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 구축

####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전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 권역형(중심동에 전담팀 설치) 지역은 개별 읍면동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기본형으로 전환
  - 인력확충에 따라 기본형은 방문대상 확대 등 심화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 방문대상 확대, 종합상담 창구 신설, 주민력 강화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 (2)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고용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상담창구에서 서비스 제공
-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 대상 등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
  - 예시) 출산·양육, 노인진입 가구 등 생애전환기 /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요양·정신 등) 등 시설 퇴소예정자 / 고위험 1인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 가족, 장애 등 위기가구
- 읍면동이 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연계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읍면동에서 이를 지원
  -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의제 설정, 읍면동 주민과 지역사회 문제 등을 공유하는 주민교육 실시,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연계·공유 등

#### (4) 「복지+건강」 기능 강화

-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제공, 방문대상 확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기능 강화,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사(간호직 공무원) 배치
  -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소집단 건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 등

### 〈 건강서비스 주요 내용 〉

- (대상) 지역 특성에 따라 방문 및 관리 대상자 선정(통합사례관리대상자 등)
- (주요업무) 건강상담 및 서비스 제공, 건강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건강 지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등
  - 지역사회 건강 관련 기관에서 신규 발굴한 대상 중 복지연계가 필요한 대상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하는 기능 수행
- 직제 및 소속은 관련법 상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 불가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업무 연계 ·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읍면동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

## 2. 공공서비스 연계 · 협력 지역화 : 시군구

- 분절화된 사업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 ·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연계 · 협력 추진
  - 시군구는 연계 ·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계획화 · 자원화 · 구조화하는 민관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기능

### (1) 공공서비스 연계 · 협력 지역기반 구축(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총괄팀))

- 시군구 · 읍면동 행정기반 구축
  - 읍면동은 민관 서비스 · 자원의 현황파악 및 연계 등 게이트웨이 역할, 시군구는 서비스 · 자원 등의 생산 · 배분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자원연계 등 담당인력 확충
    -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 · 협력 담당인력 배치 가능
- 연계 ·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실질적인 연계 · 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강화 지원
  - 전담직원 채용 등 사무국 운영 지원, 지역복지기관 등과 상시적 회의 체계 구축,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진 구성 · 운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개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실행
  - (내용) 조직 및 인력 확충 계획,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본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행정사항) 기본계획 실적 등은 정부합동평가, 포상 등에 반영

## (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질적 민관연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하여 실행 유도(시군구 유관부서는 지원)
- (통합사회보장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지역문제 해결 실행방안 마련, 서비스·자원의 생산·연계 등을 심의하는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 공공·민간기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학대, 정신질환, 돌봄 등 지역사회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심의
  - 읍면동의 서비스·자원 연계상황을 파악하고, 통합사례회의 등에서 요청받은 서비스 및 자원을 발굴·생산·연계
    - \*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필요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과제 발굴

## (3)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시군구 복지총괄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

- (개요) 지역사회 내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생산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 (내용)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총괄팀)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공모사업 지원
- (절차) 협업체계 구축 및 문제의식 공유 → 지역의제 선정 →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 모니터링 및 평가
- (행정사항) 심사과정을 거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지원 예정
  - \* 제출기한은 '19. 3. 30일 예정으로 세부양식 등은 별도 공문으로 송부예정

### 〈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

- (내용) 주민관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발굴
- (규모) 총 23.5억 원(47개 내외 시·군·구 × 100백만 원 × 50%)
- (선정) 공모신청서 제출(시도 취합) → 신청서 검토 및 평가(시도에서 행안부로 제출) → 심사 및 선정(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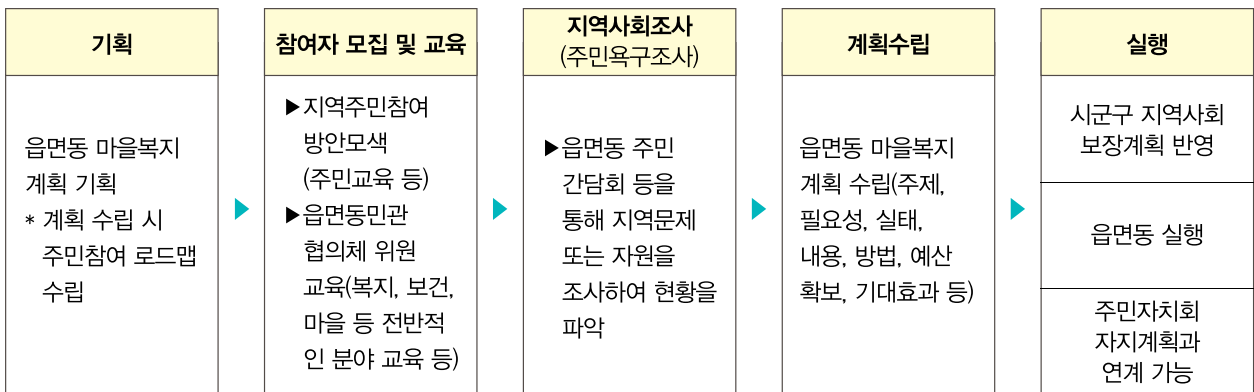
## 3. 주민력 강화 지원 :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주민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자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 (1)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 실행

- 이웃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 실행
  - 읍면동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하여 실행
    - \* 주민참여 유도 및 교육실시 등 실질적 주민참여방안 필수 반영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반영하고, 읍면동 자치계획과 연계 가능

####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절차(예시) 〉



### (2)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력에 대한 이해도 및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 실시
- 사회적 관계, 공동체, 공유, 돌봄, 사회적 자원 등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주제로 온·오프라인\* 교육,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저녁시간 등 운영가능(운영 시 담당공무원은 유연근무제 활용)

### (3)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주민망) 구축

- (인적 관계망) 주민과 민간기관 · 단체 · 협회, 마을의 업체 · 동호회 등 지역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 지역 간 지원격차 해소 방안 마련, 민 · 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통계 생산 · 관리 체계 마련

### (4) 주민생활 속 소통 · 돌봄 공간 확보

-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학습, 돌봄 등 주민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돌봄 활성화 등 지원
  - 기존 유휴 공간, 신규 마련(임차, 신 · 증축), 골목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
    - \* 돌봄(아동, 노인), 식사(공유부엌), 작물재배(텃밭), 놀이, 상담, 회의 등
- 주민들이 해당 공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SOC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 참고 주요 계획 및 회의 >

### ■ 주요 계획

구분	수립주체(수립지원)	주요내용	비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군구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li> <li>* 의회보고 등 필요(사회보장급여법)</li> </ul>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약칭 '기본계획')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li> <li>* 본 매뉴얼 상의 목차를 중심으로 계획</li> </ul>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 총괄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이 생산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과 연계 가능</li> <li>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반영</li> </ul>
마을복지 계획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웃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li> <li>기본계획에 포함</li> </ul>

\*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 조사 등 기본적인 내용은 추가 실시 없이 공통활용 가능

### ■ 주요 회의

구분	운영주체(운영지원)	주요내용	비고
통합사회보장 회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심의</li> <li>필요한 서비스·자원의 발굴·연계·생산</li> <li>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총괄·심의</li> </ul>	통합사례회의, 별도 지역케어회의 등에서 요청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솔루션회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 유관기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제고</li> </ul>	구성·대상이 유사할 경우 통합운영 가능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사례관리 실시</li> </ul>	
지역케어회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융합서비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시</li> </ul>	

편집위원 류승완, 김동화, 정상기.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